

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가  
최소한의 범위내에서

- 행위: §35②

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
국가안보·질서유지  
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 
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 
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 
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 
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 
없다.

- 개정판: §35②

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
국가안보·질서유지  
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  
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 
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 
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  
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 
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

- 개정판: 행위의 기준

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상 열거된 것에 제한하지 않고 광범위하  
게 보장하며 그 제한은 국가안보·공공복리를 위하여서라도  
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법률로써만 할 수  
있도록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함.